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8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8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태규 · 김기현
윤한홍 · 김예지 · 박성훈
김용태 · 서천호 · 윤용근
김승수 · 김위상 · 박정하
김상훈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인구감소지역은 역사·문화·자연·생태·농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관광객이 당일 방문 후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 관광객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 내 숙박시설, 음식점, 체험장 등에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음.

그러나 현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은 인구감소지역의 관광객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, 특산품,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자원을 숙박·체험·먹거리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·교통·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·폐교·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·체험·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·전통시장·특산품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10 신설).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7조의10(체류형 관광특화지구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

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체류형 관광특화지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을 공동으로 개발·운영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
1. 숙박·교통·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·폐교·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·체험·문화시설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
2. 지역의 음식·전통시장·특산물 및 역사·문화·예술·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

한 사항

3. 그 밖에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
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
기준·절차, 제2항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방법·절차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<u><신 설></u>	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<u>제47조의10(체류형 관광특화지구 의 지정 등)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」 제2 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관할 특별자 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체류형 관광특화지역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u> <u>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체류형 관광특화지역을 공동으 로 개발·운영하는 경우 우선</u>

지원할 수 있다.

1. 숙박·교통·체험 및 관광안
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·폐
교·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
·체험·문화시설로의 활용에
관한 사항

2. 지역의 음식·전통시장·특
산물 및 역사·문화·예술·
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
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
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체류형 관광 및 지
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
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
정하는 사항

③ 제1항에 따른 체류형 관광
특화지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
를 위한 기준·절차, 제2항에
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
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